

# 전산장비 관리, 운영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4.4.22.		16		
2	2015.7.1.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전산장비 관리, 운영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전산장비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(PC), 노트북 컴퓨터, 워크스테이션/ 서버, 프린터, 스캐너, 네트워크 지원 장비 등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상적으로 컴퓨터에 온-라인(On-Line)으로 사용하는 것은 포함하며 컴퓨터와 관계없이 오프-라인(Off-Line)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컴퓨터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.

**제3조 (적용범위)** 모든 교육실습용, 연구용 및 행정용 전산장비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 2 장 구 매

**제4조 (구매)** 일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물품구매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 (개인용 장비의 배정)** 개인용 컴퓨터의 배정은 아래 각호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는 정보화책임관 또는 전산정보원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14.4.22.>

### 1. 교원

가. 신규교원은 대학에 부임시 연구용 컴퓨터로 노트북과 데스크탑(Desk-Top) 컴퓨터 중 선택하는 1대를 지급하며, 재원은 신진연구과제 지원비로 한다. 단, 신진연구과제를 지원 받지 않는 교원은 교비로 한다.

<개정 2015.7.1.>

나. 기존교원은 11조(내구연한)에 의하여 교체하고 장비의 소속은 해당 학부(과)로 한다.<개정 2015.7.1>

### 2. 교원을 제외한 구성원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배정은 아래의 순위에 따른다.

가. 교육실습용 및 행정부서용

나. 단순 실험 장비로 지원

다. 학생자치단체 <개정 2015.7.1.>

라. 매각 또는 기증처리

**제6조 (구매사양)** 구입되는 장비의 규격은 아래 각호로 한다.

① 교육용 : 학부 및 학과또는 교육지원부서의 신청내용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며, 검토 또는 구매담당자가 구매사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.

② 행정용 : 정부 중앙조달청의 행망용 장비중에서 매년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전

산정보원장이 사양을 정하며, 특별히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전산정보원장의 허락을 득한다.<개정 2014.4.22.>

### 제 3 장 관 리 및 운 영

**제7조** (관리책임) 일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물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8조** (설치장소) 구입된 전산장비는 사용 장소를 이전할 경우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전산정보원에 이전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4.22.>

**제9조** (유지보수) 전산장비의 유지와 보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

1. 무상 수리 기간내의 장비는 사용자가 제작사에 신청하여 처리한다.
2.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한 장비는 전산정보원을 경유하여 사무처 총무팀에서 처리한다.<개정 2014.4.22.>
3. 위 2호의 장비 중 전산정보원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전산정보원에서 처리한다.<개정 2014.4.22.>

**제10조** (장비의 업그레이드) 신청된 업그레이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 총무팀에 인계한다.

**제11조** (내구연한) 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내구연한이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상태 점검 후 교체를 진행한다.<개정 2015.7.1.>

- ① 개인용 컴퓨터 (데스크탑, 노트북) : 5년 이상
- ② 프린터 류(레이저 프린터, 복합기 등) : 5년 이상
- ③ 워크스테이션/서버 : 5년 이상

**제12조** (반납) ① 물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반납되는 전산장비는 대학 자산관리대장에 등록된 사양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